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

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1호(2024.1.3., 일부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고시의 목적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7 제2항에서 위임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기준보수”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(실업급여·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)을 말한다.
- “공단”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.
- “소상공인”이란 법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기본계획”을 수립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세부추진계획”을 수립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고용보험료 지급 대상·기간 등의 지원기준
- 지원사업 추진일정
- 기타 사업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

제4조(업무의 수행) 공단은 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14에 따른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-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 발굴 및 제도 홍보
-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

제5조(고용보험료 지원수준) ①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고용보험료 지원은 기준보수 1등급 내지 7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.

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,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고용보험료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) ①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공단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에 의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.

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그 실적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지침)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·개정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규정) 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